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 1101 호】

2014년 08월 19일 (화)

선람	기관의 장

회람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43호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242호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12
고양시 고시 제2014-243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15
고양시 고시 제2014-24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17
고양시 고시 제2014-246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 - 43 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9월 1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감사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감사담당관실 공직윤리팀 (031-8075-213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건 발생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 고양시 소속 공무원
3.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5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감사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공 석
	팀 장 직위·성명	공직윤리팀장 이 용 안
	담 당 자 직위·성명	이 창 윤 (031-8075-2134)

관계법령 발췌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등”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민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5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제7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고양시 고시 제2014 - 242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19.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20-1 외2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8.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3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20-1	20140819	20131022	고유지명인 도래울 명칭 활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5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35	20140819	20131022	고유지명인 도래울 명칭 활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65	20140819	20131022	고유지명인 도래울 명칭 활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55-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2길 10	20140819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55-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2길 14	20140819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1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307번길 35	20140819	20100126	동헌로 시점에서 307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1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명봉산로6번길 136	20140819	20100126	명봉산로 시점에서 6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27-5, 3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94-22	20140819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57-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1길 33	20140819	2012060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99-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22	20140819	20120601	옛 지명인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0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2길 27	20140819	20120601	옛 지명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8-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솔밭2길 23	20140819	20120601	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4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2길 2	20140819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6-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254-8	20140819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350번길 175-39	20140819	20100126	충장로 시점에서 3500m에 위치한 도로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85-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30-62	20140819	20090710	광역도로로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의 도로명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58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92	20140819	20100126	옛 포구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495-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47-33	20140819	20090911	호수공원의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0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100-18	20140819	20090911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46-3, 146-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395-8	20140819	20100126	견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24-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2길 11-3	20140819	20110715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58-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 43-12	20140819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65-1	20140819	20100126	은행마을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238-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 108번길 24-13	20140819	20100126	장진천길 시점에서 1080m에 위치한 도로	
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7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9-1	20140819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7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9-2	20140819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5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26	20140819	20090911	강선-장성마을간 도로로 한 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75-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14번길 3	20140819	20100126	강성로 시점에서 214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고시 제2014 - 243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 월 19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8.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24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	2014-08-19	관련지번변경	

고양시 고시 제2014 - 24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247-29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8.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47-29	2014-08-19	신축으로 인한 건물멸실	2011.7.29.	내곡동	

고양시 고시 제2014 - 246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9-359(2009.12.23.)호로 결정된 덕양구 토당동 674-1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1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 8. 19.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토당동 676-21 번지 일원	토당동 674-16 번지 일원	9,519	감)21	9,498	고양시 고시 제2009-359호 (2009.12.23.)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5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 위치 : 지번 변경 당초) 토당동 676-21번지 일원 변경) 토당동 674-16번지 일원 ▹ 면적 : 구적오차 정정 당초) 9,519㎡ 변경)9,498㎡	▹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분할(합병)등 지적정리결과에 의한 시설 위치(지번변경) 및 면적(구적오차 정정) 변경

□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